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벨류웨이4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변경 사유 : ①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추가

- ②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)
- ③ 제10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- ④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- 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4. 8. 7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 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</u> 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 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</u> <u>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u>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 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 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 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 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 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요약정보			
-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 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</u> <u>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, (생략)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 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28. 기준</u>



	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7. 24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7. 24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30. 기준</u>
투자자유지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(생략)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(생략)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] 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<신설>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] 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<u>2023.06.23</u>
---------------	---------	---	--

			<p>- 자투자신탁 추가(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투자신탁[채권]) 2024.08.07</p> <p>- 환매일정 변경 : 2(3)영업일 기준으로 4(4)영업일에 지급 → 3(4)영업일 기준으로 3(4)영업일에 지급</p> <p>- 투자대상자산 추가(단기사채, 기업어음증권)</p>
		<p>-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<신 설></p>	<p>-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2024.08.07 투자대상자산 추가(단기사채)</p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4. 6. 30. 기준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4. 6. 30. 기준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최근 3 년 경과 내역 삭제	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 근 변경 내역]</p> <p>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 자신탁[채권] 책임운용역 : 신홍섭 (2020.01.09~2020.07.21)</p>	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 근 변경 내역]</p> <p>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 자신탁[채권] <삭 제></p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대상 가. 투자대상	모투자신탁의 투자대 상자산 추가(단기채 권) 및 기재 명확화	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</p> <p>(1)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 투자신탁[채권] 1) 채권 : 사채권(신용평가등 급 A-이상, 사모사채권, 자산</p>	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</p> <p>(1)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 투자신탁[채권] 1) 채권 : 사채권(취득시 신 용평가등급 A-이상)<전자증권</p>

	<p>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추가(기업어음증권)</p> <p>환매조건부 매수 삭제 및 번호 정정</p> <p>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및 번호 정정</p> <p>번호 정정</p> <p>기재 정정</p>	<p>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</p> <p>3) <u>양도성예금증서</u> (신 설)</p> <p>7) <u>환매조건부 매수</u> 8) (생략) 9) (생략) 10) (생략) 11) (생략) (신 설)</p> <p>12) (생략)</p> <p>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생략)</p>	<p>법 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의 경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</p> <p>3) <u>어음</u> ▶ <u>기업어음증권(신용평가등급 A2 이상,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</u> ▶ <u>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(신용평가등급 A2 이상)</u> ▶ <u>양도성 예금증서</u></p> <p>(삭 제) 7) (현행과 같음) 8) (현행과 같음) 9) (현행과 같음) 10) (현행과 같음) ▶ <u>환매조건부 매수</u></p> <p>11)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8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생략)</p>
--	---	--	--

	<p>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추가(단기채권) 및 기재 명확화</p> <p>환매조건부 매수 삭제 및 번호 정정</p> <p>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및 번호 정정</p> <p>번호 정정</p> <p>기재 정정</p>	<p>(2)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</p> <p>1) 채권 : 사채권(신용평가등급 A-이상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</p> <p>7) <u>환매조건부 매수</u></p> <p>8) (생략)</p> <p>9) (생략)</p> <p>10) (생략)</p> <p>11)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12) (생략)</p> <p>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(생략)</p>	<p>(2)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</p> <p>1) 채권 : 사채권(<u>취득시</u> 신용평가등급 A-이상(<u>전자증권법 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의 경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</u>)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</p> <p><삭제></p> <p>7) (현행과 같음)</p> <p>8) (현행과 같음)</p> <p>9) (현행과 같음)</p> <p>10) (현행과 같음)</p> <p>▶ <u>환매조건부 매수</u></p> <p>11)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8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(생략)</p>
<p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p> <p>나. 투자제한</p>	<p>기재 정정</p>	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</p> <p>(1) 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/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</p> <p>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 -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 대출</p>	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</p> <p>(1) 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/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</p> <p>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 - <u>법 제 83 조제 4 항</u>에 따른 단기 대출</p>

<p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</p>	<p>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추가</p> <p>번호 정정</p> <p>기재 구체화</p>	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] 1) 투자전략 <input type="checkbox"/>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/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<신 설></p> <p>(3) (생략)</p> <p>2) 위험관리 전략 <input type="checkbox"/> 채권 위험관리 전략 <신 설></p>	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] 1) 투자전략 <input type="checkbox"/>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/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(3) 크레딧 전략 (4) (현행과 같음)</p> <p>2) 위험관리 전략 <input type="checkbox"/> 채권 위험관리 전략 세부 위험관리 전략 기재 구체화</p>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	<p>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</p>	<p>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(생략)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(생략)</p>	<p>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(생략)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(생략)</p>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</p>	<p>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</p>	<p>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를</u> 하지 않습니다. (생략)</p>	<p>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(생략)</p>
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	<p>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</p>	<p><u>표준편차 : 6.21%</u></p> <p> 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트러스톤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</p> <p>2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</p> <p><u>표준편차</u></p>	<p><u>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용) : 12.34%</u></p> <p>- 위험등급 변경 내역 :</p> <p><u>2024.8.7 :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“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”에서 “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” 기준으로 변경</u></p> <p>〈트러스톤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</p> <p>2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</p> <p><u>위험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 사용)</u>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</p> <p>나. 환매</p>	<p>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</p>	<p>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</p> <p>〈신 설〉</p>	<p>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</p> <p><u>〈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 수수료 부과 여부〉</u>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</p> <p>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</p>	<p>-</p> <p>-</p>	<p><u>2024. 6. 28. 기준</u></p> <p><u>2024. 7. 24. 기준</u></p>
<p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			
<p>1. 재무정보</p>	<p>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</p>	<p>-</p>	<p><u>2024. 7. 24. 기준</u></p>
<p>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</p>	<p>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</p>	<p>-</p>	<p><u>2024. 7. 24. 기준</u>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	<p>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</p>	<p>-</p>	<p><u>2024. 7. 24. 기준</u></p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 회사연혁 추가	- <신 설>	<u>2024. 6. 30. 기준</u> <u>2022.11 종합자산운용사</u> <u>전환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5 기(2022.12.31)</u> <u>제 24 기(2021.12.31)</u>	<u>제 26 기(2023.12.31)</u> <u>제 25 기(2022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30. 기준</u>
3. 집합투자재산 관리 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 업자)	신탁업자 업데이트 정보	주소 및 연락처 : <u>서울특별시</u> <u>중구 을지로 55 (02-</u> <u>2002-1111)</u> 연혁 : <신 설>	주소 및 연락처 : <u>서울특별시</u> <u>중구 을지로 35(을지로 1 가)</u> <u>(1599-1111)</u> 연혁 : <u>1971년 6 월 설립,</u> <u>2015 년 9 월 외환은행</u> <u>합병</u>